

등록번호	기획행정팀-6597
등록일자	2020.12.31.
결재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비공개(7)

결재	★차장	본부장직무대리	대표이사	
	이지혜	정수연	12/31 백미순	
협조				

SFWF 인권경영 추진결과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SFWF 인권경영 추진 결과 보고

## I 추진 배경

### □ 추진 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18.05.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08.29.)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2019.12.31.)

## II 주요 추진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인권경영 체계 구축	①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침(규정) 마련 ①-1. SFWF 인권경영 이행 계획 수립(2018.11.21.) ①-2.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2019.08.22.) 및 개정(3회)
	②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인원 배치 - 기획조정본부 기획행정팀 이지혜
	③ 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대내외 공포 및 확산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2019.09.20.) - 노-사 대표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④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019.10.08.) ④-1.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0.11.26.) ④-2.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0.12.30.)
	⑤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필수 교육 실시 및 서울시 간부 인권 교육 참여 강화 (2018.11.05./2019.07.25./2019.09.24./2020.06.15./2020.11.18.)
인권영향 평가 실시 (실행·공개)	① 기관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2020.12.9.~12.29.)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인권침해방지조치 및 실행계획 수립(2020.12.30.) ③ 인권경영 추진 과정 홈페이지 공개(2020.12.31.)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①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2020.09.17.) - 재단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메뉴 신설 -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신고 가능 ②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2020.12.31.)

## □ SFWF 인권경영 이행 계획 수립

○ SFWF 인권경영 추진체계도 마련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2-1. 기관운영 인권 영향평가 실시	2-2.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실시		
①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②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③기관 내·외부에 확산	①재단 운영 인권 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②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③인권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④대표이사 보고 및 공개	①주요 사업 인권 영향평가 실시 계획수립 ②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체크 리스트 지표마련 및 교육 ③주요사업 인권 영향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④대표이사 보고 및 공개	①인권경영 실행 ②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①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②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지표(안) 준용

##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19.8.22) 및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제6조(직원인권 보호), 제7조(성평등 및 재생산권 보호),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9조(산업안전 보장), 제10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제12조(환경권 보장), 제13조(구제조치), 제14조(정보인권보호)

###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제17호(전담조직), 제18조(인권교육 실시)  
제19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제21조(구성), 제22조(소집 및 회의), 제23조(의견청취), 제24조(이익 충돌 회피)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7조(외부위원 수당 등)

###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목적), 제29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제30조(인권실태조사)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및 운영), 제32조(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제33조(인권침해행위 처리)  
제34조(인권침해행위의 구제 및 시정조치),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인원 배치

-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담당 부서	담당자(직급/직책)	담당업무
기획조정본부	이지혜(3급/차장)	인사, 노무 등

## □ 인권경영 선언문 대내외 공표 및 확산

- 일 시 : 2019.09.20.(금) 14시 10분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
- 참 석 : 대표이사 및 재단 전 직원
- 인권경영 개요 소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권경영 실행 절차**  
인권경영은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행 및 공개, 국제절차 제공의 4단계로 실행합니다.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규정 제정
- 인권경영 선언 공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 핵심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교육
- 결과보고서 작성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리스크 분석 및 개선
- 전 과정 내내 공개

4단계  
국제절차 제공

- 인권침해 국제절차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선언**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의 현지 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

- 노사대표 공동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대표이사, 외부전문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개최 일시	안건
1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11.26.)	- 재단 인권경영 추진 현황 보고 - 재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심의
2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12.30.)	- 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 재단 인권침해구제 매뉴얼 수립(안)

## □ 인권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필수 교육 실시 및 서울시 간부 인권 교육 참여 강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내부결재  
(권위)

제 목: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교육 실시계획

1. 2020년 역량강화교육(가)계획명칭: 58829, 2020. 3. 3. 1번건입니다.  
2. 위 조와 관련하여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개요

- 일시: 2020. 7. 30 (목) 12:00~18:00
- 장소: 삼성세 호텔강연
- 대상: 대표이사 및 5개 본부 본부장 스페이스팀 총책임자(총 7명)
- 비 롚:

차시	교육내용	교육강사
1차시	일일 업무에 대한 팀 행동강령 교육	이로영 기획조정본부장(본부장계)
2차시	기초 경영관리 교육	이로영 기획조정본부장(본부장계)
3차시	경영철, 경영의 역할교육	백인준 대표이사
4차시	경영관습 교육	백인준 대표이사

나. 소요예산: 비예산(내부상자 교육)  
다. 행정사항: 필수적인 권한 교육 이수시간 인정

붙임: 교육자료(연천서부) 1부, 끝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내부결재  
(권위)

제 목: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1. 가피행정창-3543호(2020.07.30.) 편성됩니다.  
2. 위 조와 관련하여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교육개요

- 대상: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 교육
- 일시: 2020년 7월 30일(목), 12:00~18:00
- 장소: 삼성세 호텔강연
- 대상: 대표이사 및 5개 본부 본부장 스페이스팀 총책임자(총 7명)
- 나. 교육내용

차시	교육내용	교육강사
1차시	일일 업무에 대한 팀 행동강령 교육	이로영 기획조정본부장
2차시	기본 경영관리 교육	이로영 기획조정본부장
3차시	경영철-경영의 역할교육	백인준 대표이사
4차시	경영관습 교육	백인준 대표이사

나. 교육방법: 강의(1시간) 비례, 질의응답 등)  
다. 소요예산: 비예산(내부상자 교육)  
라. 행정사항: 참여제한 의무교육 이수시간 인정

붙임: 교육부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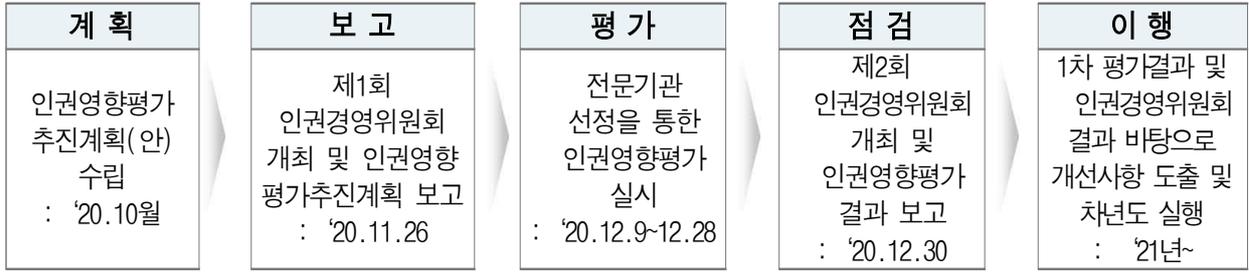
### 집합교육 1 (2020년 대표이사 및 본부장 단장 3차 역량강화교육)



### 집합교육 2 (2020 서울 인권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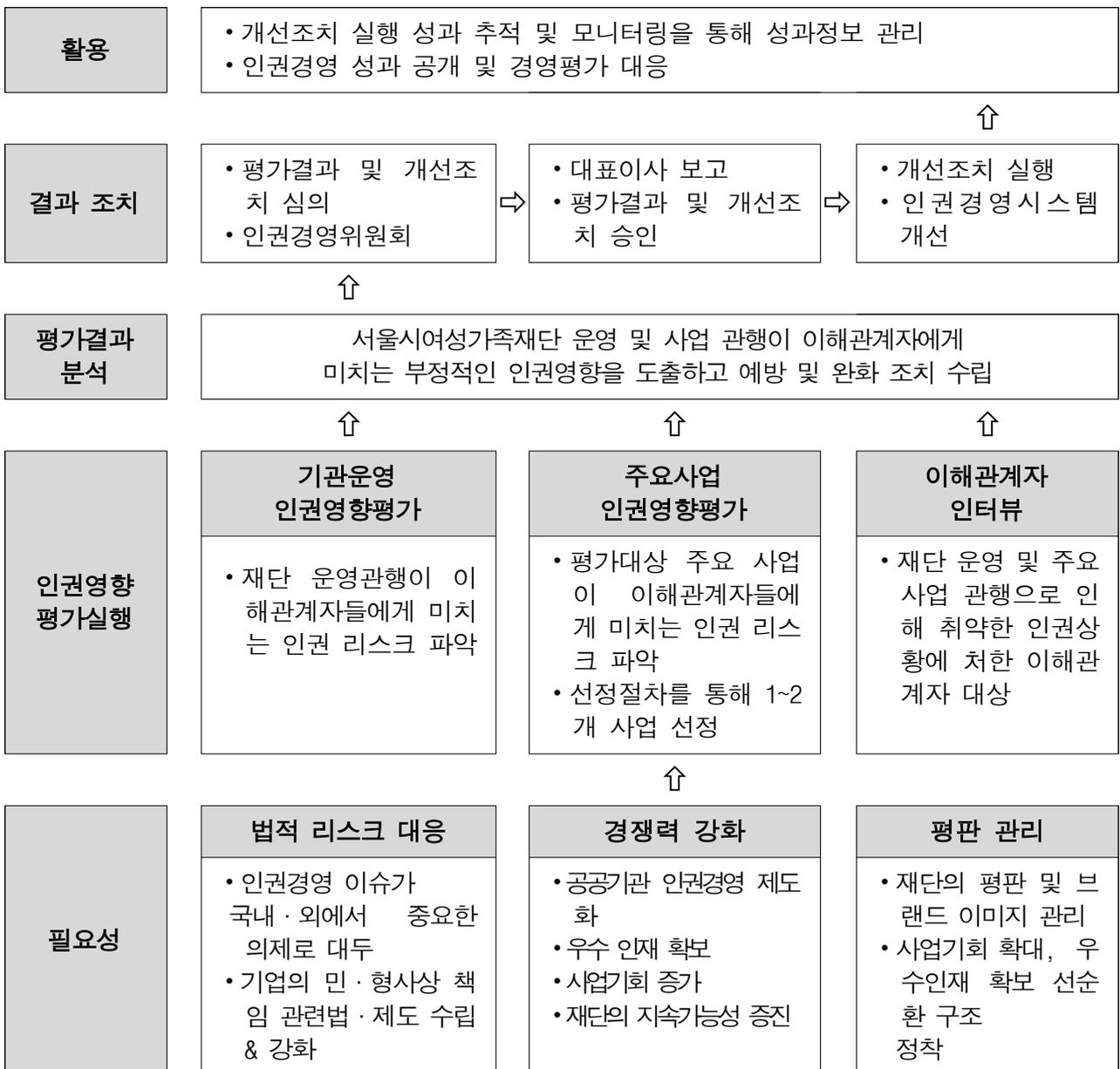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1. 추진 과정



### 2.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 인권영향평가



##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p>1단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재단 TF + 외부 전문기관 참여)</li> <li>•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주요사업 1개)</li> <li>• 2020 재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li> <li>• 2020 재단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li> </ul>
<p>2단계 사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li> <li>• 국내외 기준에 따라 재단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li> <li>• 평가대상 사업 선정(성평등사업본부 사업)</li> <li>•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기관운영·주요사업)</li> </ul>
<p>3단계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TF워크숍(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교육)</li> <li>• 1차 평가(기관운영·주요사업, 내부 문서 및 규정을 대상으로 재단 TF 및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li> <li>• 2차 평가(1차 평가결과 검토 및 추가 자료 검토 통해 1차 평가 보완)</li>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li> </ul>
<p>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li> <li>•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li> <li>•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li> </ul>
<p>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li> <li>• 실행 성과 결과 보고</li> <li>•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li> </ul>

## 3. 인권영향평가 지표

### 가.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29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제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11
		산하기관,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게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고객 인권 보호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4
		제품 및 서비스 결함시 조치	
		고객 사생활 보호	
합계	10	33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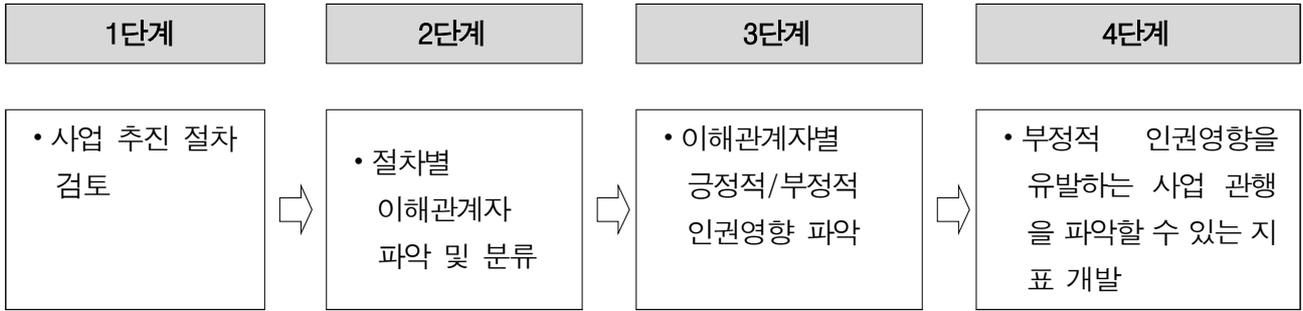
## 나.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6	3			
2	고용상의 비차별	16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2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1
5	아동노동의 금지	6				8
6	산업안전 보장	15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7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7
9	환경권 보장	5	8			5
10	고객 인권 보호	12				2
합 계		110	18			28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9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2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75.4	
10	고객 인권 보호	100	
평 점		94.4	

- 전체 156개 지표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 '해당 없음' 제외)는 '예' 110개 (85.9%), '보완 필요' 18개(14.1%)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 인권보호, 고객 인권보호 등 7개 분야가 지표를 모두 충족한 반면,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는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 재단 인권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 및 절차 보완을 제안함
- 더불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단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영향권 내 협력기관으로 인권존중 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다.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도출 단계



### 라.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항목	지표수
1	공정운영	5
2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5
3	직원 인권보호	5
합계	3개 항목	15개 지표

### 마.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정운영	3	2			
2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5				
3	직원 인권보호	5				
합 계		13	2			

No	분 야	점수	비고
1	공정운영	84	
2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100	
3	직원 인권보호	100	
평 점		94.7	

- 사업과제 프로세스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위원 선정 시 대상 사업의 직접 참여자는 배제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위탁과제 수행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히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규정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인권침해방지조치 및 실행계획 수립

구분	세부내용
정책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 등 공급망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재단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마련</li> <li>•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의무를 반영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로 운용하는 방안 마련</li> <li>• 인권경영 현장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환경권 보장 정책을 구체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소통하는 채널 강화</li> </ul>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조치 수립·시행</li> <li>• 개선조치 이행 성과를 추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이해 제고 도모</li> <li>• 필수 환경정보(주요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 에너지 효율성 및 화학물질 사용 정보, 자원재활용, 자원효율성 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투자 정보, 환경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li> </ul>
교육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기구 위원 및 전담조직 실무자 대상 구제절차 교육 및 훈련 제공 제안 (전문가 초청 및 내부 워크숍)</li> </ul>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재단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대상**  
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아래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fiancee14@seoulwomen.or.kr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기획행정팀 (02-810-5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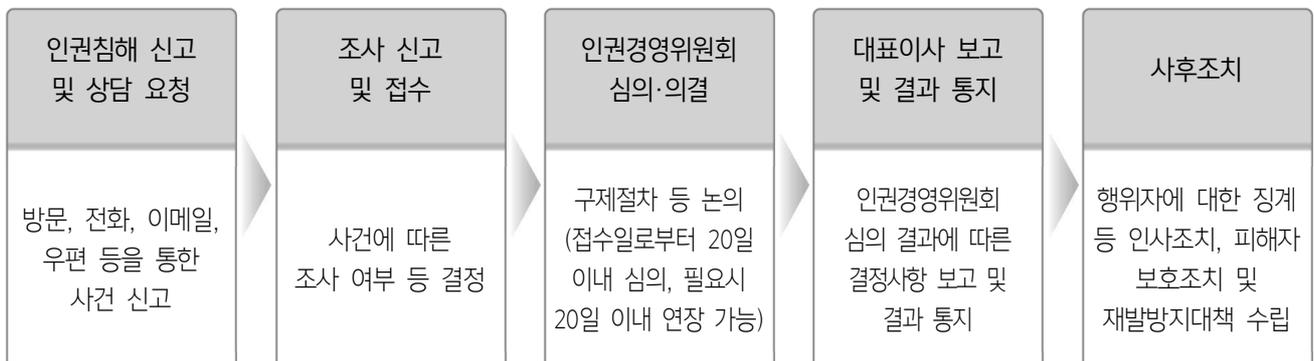
[신고서 다운로드](#)

## □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 ○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구제창구 운영

- 재단 홈페이지 內 ‘인권침해신고센터’ 메뉴 신설
  - 신고 대상 : 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
  - 신고 방법 : ‘인권침해신고서(붙임 1)’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 이메일(fiancee14@seoulwomen.or.kr)  
주소(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기획행정팀)  
전화(810-5037)

### ○ 인권침해사건 처리 추진 체계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SFWF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매뉴얼」에 따라 처리함

끝.